

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

-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-

▶ 연구윤리위원회 규정

1. 규정 및 대상

이 규정은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지에 투고하는 저자 및 관련자의 연구윤리 준수를 감독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
2. 업무 및 역할

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,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3. 구성 및 운영

1)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.

2)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, 편집위원, 독자 등의 제보가 접수될 때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, 재적위원 2/3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으로 판정한다.

3)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된다.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.

4. 권한 및 집행

1)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.

2)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.

5. 위반 및 보고

1) 저자, 심사위원, 편집위원, 독자 등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,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.

2)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3)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
6. 조사 및 심의

1)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며,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의와 의결을 마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2)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3)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관련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.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되며, 위원회는 조사 거부행위를 규정 위반의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.

7. 소명 및 신원

- 1)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관련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.
- 2)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8. 징계 및 공시

- 1)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2), 3), 4)항의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.
- 2) 경고, 투고자격 정지, 제명할 수 있다.
- 3) 해당 논문을 취소(retraction)하고,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공지한다.
- 4) 징계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린다.
- 5)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9. 세칙

- 1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.
- 2)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,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10. 시행

- 1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